

안전인증소식

Q & A



전기용품안전인증

우리나라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은 1974년 1월 4일자로 공포되어 30년이 넘게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몇차례의 개정을 통해 2009년 1월 1일부터 「자율안전확인제도」가 운영되는 등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술표준원에서 응답한 내용중 꼭 숙지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질의와 응답을 여기에 게재하오니 전기용품제조·수입업체의 많은 참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 주의 : 본 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협회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전기맛사지기 본체는 중국에서 생산하고, 어댑터는 한국에서 생산되어, 전기 안전인증을 필요하였는데, 어댑터를 중국으로 보내 본체와 함께 포장하여 수입 전기안전용품으로 통관 후 판매할 수 있는지?

단, 본 제품은 의료기기로서의 수입 품목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광고 문구 등에는 질병치료, 경감, 예방 등의 문구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임

※ 본 제품은 본체와 별도로 분리된 어댑터(input : 220V, AC output : 12V DC)에 의해 제품에 전원 공급되며, 본체는 motor 2개와 pcb, limit, switch 등으로 구성, 두드리는 기능 없이 주무르는 기능의 제품임.



DC 12V를 사용하는 전기맛사지기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이 아니므로, 귀하께서 문의하신 대로 국내에서 안전인증 받은 직류 전원 공급장치(어댑터)를 중국으로 보내 본체와 함께 포장하여 수입·판매 할 수 있음



전기모기채에 대한 안전검사실시의 적용여부는?

테니스라켓 모양으로서 1.5V 건전지 2개를 삽입한 후 전원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모기가 접촉되면 충격으로 기절하는 모기잡는 생활용품으로서, 안전망이 라켓양쪽으로 부착, 고정 되어 있음.

시중에서 현재 많이 팔리고 있는 제품이나 수입 전에 안전검사 사항을 확인하고 싶음



순간적으로 고압을 발생시켜 모기를 잡는 “전기모기채”는 건전지만 사용가능한 제품이므로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이 아니나, 충전기가 내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에 해당 되어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



전기용품(전자식훈증기)을 군납하는 업체로서 2001년 이후 상기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인증 불필요에 의해 당사에서 인증 받았던 안전인증서를 반납하고, 이후 군용 납품 등 판매를 하여 왔는데, 공군에 기타품목 포함 전자식 훈증기 5,000개를 납품코자 하였으나, 공군으로부터 전기용품 안전인증서를 요구한 바,

당사 전자식훈증기의 안전인증 필요 법령 시행이 2007년 3월부터 시행되었고, 당사에서 납품 코자하는 전자식 훈증기의 제조시험이 발효이전 제품으로 납품 가능한 제품이라 이에 대한 납품검사를 요청하였음.

그러나 군에서는 안전인증서를 요청하는바, 현재 납품을 완료치 못하고 있어, 납품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부과처분 수용 또는 아예 납품 포기해야 하는 난처한 처지에 놓여 있는데,

2007년 3월 이전 생산제품에 대한 전기용품 안전인증이 필요한지, 아니면 2007년 3월 법령 시행 이후 제조한 전기용품에 대하여만 안전인증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청함



2005. 10 .11에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전기훈증 살충기가 안전인증대상 품목으로 지정되었으나, 2007. 3. 1 이후 출고 되거나 통관된되는 제품부터 적용함에 따라 2007.3.1 이전에 출고된 전기훈증 살충기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어도 판매가 가능함

